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황인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8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제리, 김춘례, 김혜련,  
안광석, 전병주, 최 선  
의원(9명)

##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의식과 일상의 생태적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 보장, 환경·생태 보존 등에 관한 가치관 함양 등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9조)

- 마.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와 용도,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제18조)
- 사.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9조)
- 아.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자.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정 시수 이상 생태전환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21조)
- 차. 생태전환교육 관련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 카.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함(안 제23조)
- 타. 생태전환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큰 학교나 단체 등의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4조~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식과 일상의 생태적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전환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생태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태전환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생태전환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 등의 생태소양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 방안
5.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평가
7.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생태전환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태전환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제12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생태전환교육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태전환교육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생태전환교육이나 환경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전환교육 담당 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20조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전환교육 관련 지도자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전환교육 관련 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3. 생태전환교육 교원 연수 지원
4.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5. 그 밖의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생태전환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생태전환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52000000010

##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황인구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20.

회신일 : 2021.05.27.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20조(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생태전환교육의 위탁), 제23조(교원 연수 등), 제24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기 추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비용추계 제외(붙임 참고)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9,500천원(연평균 3,9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9,500천원으로 연평균 3,9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증원되는 바, 5명 위원에 대한 연 3회 개최기준(현재 연3회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
  - 안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위원회 구성을 5명으로 하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제외한 3명은 외부 전문가로 가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임시회 각 1회 기준)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9,500천원(연평균 3,900천원)
  - 총비용 =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비  
= 13,500천원 + 6,000천원

= 19,5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비 (안제7조)	2,700	2,700	2,700	2,700	2,700	13,5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비 (안제14조)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소계 (b)	3,900	3,900	3,900	3,900	3,900	19,500
	총비용(b-a)	3,900	3,900	3,900	3,900	3,900	19,500

○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비 ≙ 13,500천원

※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15명 → 20명으로 5명 증원에 대한 비용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운영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자문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2,250천원 + 450천원

≙ 2,7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증원된 위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5명 × 150,000원 × 3회  
= 2,25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임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증원된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5명 × 30,000원 × 3회  
= 45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비 ≙ 6,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자문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900천원 + 300천원

≙ 1,2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3명 × 150,000원 × 2회  
= 9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임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공무원 2명을 제외한 3명 지급 전체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5명 × 30,000원 × 2회  
= 30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무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l@seoul.go.kr

##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사업내용
제5조(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2021 생태전환 교육 기본 계획」,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첨부자료 참고		
제20조(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생태전환교육내실화	2,279,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에 활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보급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농촌유학 운영, 생태전환교육 실천 문화 확산, 생태전환교육 교원 직무연수, 생태전환교육 교원 자율연수, 생태전환교육 교사 지원단 등(안제20조제2항 해당 내용)</li> <li>- 소요예산 : 2,279,030천원</li> <li>※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는 환경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폐교를 활용한 센터(가칭 생태전환교육파크)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제공받아 별도 첨부</li> </ul>
제22조(생태전환교육의 위탁)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1,201,710	<p>(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생태전환교육자료개발</li> <li>-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에 활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보급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민간위탁으로 추진</li> <li>- 소요예산(민간 위탁 비용) : 68,800천원</li> </ul>
제23조(교원 연수 등)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	921,470	<p>(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생태전환교육 교원 직무연수, 생태전환교육 교원 자율연수, 생태전환교육 교사지원단</li> </ul>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중고 교원 및 학교 관리자 직무연수 운영(13과정),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중고 교원 및 학교 관리자 자율연수 운영(11회) 등</li> <li>- 소요예산 : 921,470천원</li> </ul>
제24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생태전환교육내실화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1,2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li> <li>- 대상 :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생태전환교육자료개발, 민간생태전환협력사업</li> <li>- 내용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과 연계하여 민·관·학 협력 소규모 학생 참여형 생태전환교육 지원, 민간기관 연계 사업 등</li> <li>- 소요예산 : 1,201,710천원</li> </ul>

자료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